

울산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1065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905,3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905,302원 및 그 중 91,661,33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8,905,302원 및 그 중 91,661,33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4911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24. “피고는 원고에게 91,66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같은 법원 2019나1572)을 거쳐 2020. 12.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카합1072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1. 4. 21. ‘위 가항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451,201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카합1071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1. 3. 3.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4928, 2019나1517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147,69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11. 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시가 202,926,54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극재산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원금 기준 91,661,330원) 외에도 주식회사 D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를 비롯한 채무 합계 213,427,717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9. 26. 주식회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1. 8. 해지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8. F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2019. 12. 10. G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 및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C의 재산상태와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와 가스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이로 C의 부탁으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C의 기존 채무 및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 외 다른 채권자의 변제요구에 의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C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C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원고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주장과 같은 대위변제 등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F조합과 G 주식회사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F조합과 G 주식회사가 선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5. 12.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28,905,302원[= 판결금 채권 117,306,411원(= 원금 91,661,330원 + 2018. 8. 20.부터 2019. 6. 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369,608원(= $91,661,330\text{원} \times 0.06 \times 290/365$) + 2019. 6. 6.부터 2021. 5. 1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1,275,473원(= $91,661,330\text{원} \times 0.12 \times 706/365$)) +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합계 11,598,891원(= 7,451,201원 + 4,147,69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2. 4. 당시 시가는 210,803,920원인 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1,276,03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담보가액은 169,527,887원(= 210,803,920원 - 41,276,033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인 128,905,30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8,905,302원 및 그 중 91,661,33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91,661,33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권자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채권자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따라서 가액배상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게 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부 동 산 목 록

1. 부산 서구 I 주유소용지 141㎡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55.62㎡

2층 22.6㎡. 끝.